

+ 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 여름호 |

2026년
통권 제4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 회 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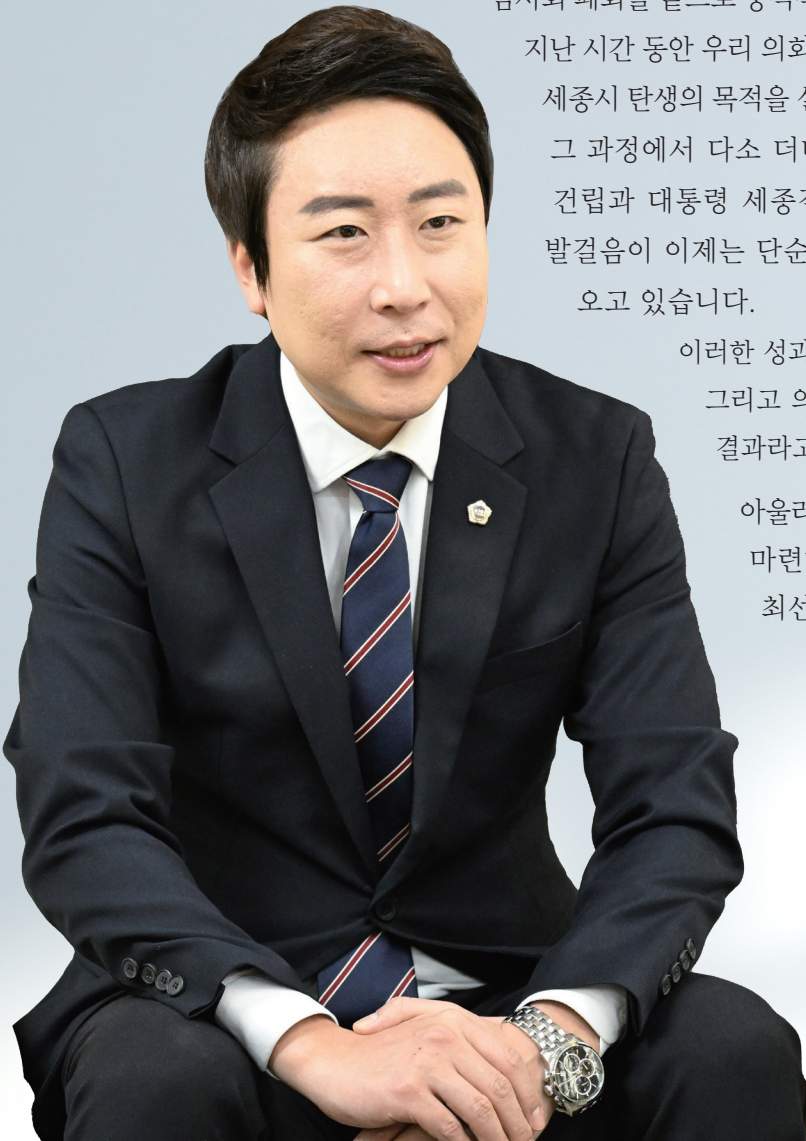
2022년 7월 힘차게 출발했던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오늘 제104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세종시 탄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더디게 느껴지기도 했던 국회세중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발걸음이 이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염원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 제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4대 의회 임기 동안 우리 의회는 총 1,090여 건의 조례 제·개정, 303회의 5분 자유발언, 17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25회의 긴급현안질문, 50 건의 결의안과 건의문을 비롯해 수많은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과 맞닿은 다양한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세종의 미래를 향한 고민과 책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와의 이견으로, 때로는 지역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민주적 과정이었으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시와 시민을 위해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주셨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정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이 있었기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땀은 세종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아쉬움이 따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한 시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3개월여의 임기 동안에도 끝까지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할 제5기 시정과 교육행정은 2030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중요한 여정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5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역시 시민의 기대 속에서 세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4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은 도시입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가 세종의 내일을 더욱 밝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세종시의 내일에도 희망과 활력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09



12



15



17



27



43



표지이야기

흔히들 수국과 혼동하는 이 꽃의 이름은 불두화佛頭花다. 부처의 머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간에서는 불두화의 꽃말을 부처가 설파하고자 했던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한다. 우주 만물은 변화하고, 생멸을 지속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제4대 의회의 끝맺음과 제5대 의회 개원이라는 변화 위에서 이어진다. 진정한 내일은 원인과 결과를 잇는 과정의 고리를 이해하는 데에서 온다. 제4대 의회의 끝과 제5대 의회의 시작을 조율하는 6월, 계간 『세종의정』 여름호를 엮으며 다음 문의 빔장을 푼다.

2026년 동권 제48호

발행일 2026년 6월 4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행인 임채성 의장 제작부서 홍보기획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계간 『세종의정』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02
폐회사

38
사무처돋보기

06
제4대 의회 성과

40
청렴문답

14
의정포커스

42
세종스케치

17
결의안 · 건의안

46
세종에서 놀자, 쉬자

19
주요안건 처리현황

48
의정주요뉴스

23
상임위원회 활동

51
독자투고

30
5분 자유발언

52
입법정보

37
시정질문

70
의회홍보채널 안내



제4대 의회, 시민과 함께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이끈다

2022년 7월 4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식 개원을 알렸다. 지역사회에는 의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이후 맞이한 첫 개원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안고 출발한 의회였으며, '젊은 의회', '초선 의원', '여소야대', '행정수도 완성' 등 많은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이다. 2026년 여름, 행동으로 우려를 잠식하고 노력과 성과로 막을 내린 제4대 세종시의회가 출발선에서 함께 했던 키워드를 어떤 결과로 탈바꿈했는지 돌아보자.



① ‘조례안 발의 건수 전국 1위’ 쾌거, ‘일 잘하는 의회상’ 정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민선 8기 출범 후 개원 1년간 세종시의회(의원 20명)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5.4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¹⁾를 기록했다.

20명의 의원 중 17명의 의원이 초선이었던 제4대 세종시의회는 개원 당시 의원 평균연령 또한 약 47세로 매우 젊은 수준이었다. 여소야대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젊은 의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있었으나, 1년 만에 우려의 시선을 실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소속 의원 중 3명이 조례안 발의 건수로 상위원을 차지했다. 이순열 의원이 13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 김재형 의원이 10건으로 공동 10위에 올랐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이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계기로 세종시의회는 ‘본업에 충실한 의회’, ‘일 잘하는 의회’ 등 행동하는 의회상을 굳건하게 정립했다. 해당 통계 기준 연도인 2023년, 세종시의회는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금액의 의정비를 받는 실정이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제4대 의회가 출범 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일궈낸 성과인 것이다.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제4대 세종시의회 의경정과 실천, 그 중심 어린 행보가 세종의 변화를 이끌고, 시민의 내일을 더 나은 미래로 바꾸어 나간 의정이었다.

제4대 세종시의회는 총 31번의 회기와 78번의 본회의, 1,055건의 조례 제개정이라는 기록을 새기며 쉽 없이 달려왔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함이다. 입법 활동이라는 명명(命名)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적 실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2022년 여름 열정으로 점철된 출발점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었다.

전체 조례안 발의	순위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서울(454건)	1	세종(5.40건)
제주(234건)	2	광주(4.48건)
경기(228건)	3	대전(3.27건)
부산(213건)	4	서울(3.12건)
광주(209건)	5	제주(2.93건)
세종(182건)	6	전북(2.88건)
대전(180건)	7	부산(2.68건)
인천(179건)	8	전남(2.30건)
충남(173건)	9	대구(2.16건)
전남(169건)	10	충남(2.06건)
대구(166건)	11	11 충북(1.74건)
전북(166건)		12 인천(1.74건)
충북(151건)	13	울산(1.59건)
경남(144건)	14	경북(1.54건)
경북(136건)	15	경남(1.16건)
강원(114건)	16	강원(1.12건)
울산(97건)	17	경기(1.06건)

순위	광역의회	의원 명	발의건수
1	서울	박성연	18건
2	서울	이병도	17건
3	세종	이순열	13건
	서울	김길영	
6	서울	김지향	12건
	광주	임미란	
7	부산	김효정	11건
	인천	신동섭	
10	광주	박미정	10건
	대전	송환섭	
14	세종	김재형	9건
	서울	김춘곤	
	서울	문성호	
	부산	배영숙	
	광주	박희율	
	광주	조석호	
9	전북	김정수	
	제주	송창권	
	제주	이승아	
	세종	김현미	
	서울	김경	

제4대 세종시의회 처리 안건 및 발언
(제105회 임시회 기준)

- 회기 31회 (본회의 총 78회)
- 조례 제개정 총 1,055건 (처리안건기준)
- 5분 자유발언 총 303건
- 시정질문 총 15건
- 긴급한안질문 총 27건
- 결의안 총 56건
- 건의문 총 7건



¹⁾민선 8기 지방의회 기준(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17일)
*전체 조례안 발의 건수: 의원, 위원회, 시장·도지사 교육감 발의 포함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의원 발의 건수를 의원 수로 나눈 값

*민선8기 지방의회 기준(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17일)

(출처) 머니투데이 더리더, 2023년 5월 4일

1) 지방의회 종합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 오픈을 기념으로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을 전수 조사함.

② 행정수도 완성의 청사진을 그린다

대내외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보에 심혈을 기울인 점도 빼 수 없는 대목이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세종지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지방법원 설치 등 굵직한 국가적, 지역적 현안의 해결 기반을 닦아야 하는 과제 속에서 출범했다. 그렇기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를 위해 4년간 이어진 의정활동도 다양했다.

먼저 세종시의회는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의 공감대를 구축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 아울러 국회규칙의 제정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며 아낌없이 노력해 왔다. 이어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앞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지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한뜻으로 시민사회의 염원을 정부에 전했다.

그 결과로 2023년 10월 6일 「국회세종지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자치시대 실현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2024년 9월 24일에는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5분 자유발언,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처럼 수많은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공통된 목적은 '인구와 도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법 수요의 해결',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 접근성 제고'였다. 적극적인 활동의 결실로 일궈진 해당 법안 통과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궁극적으로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이제 세종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부지 조성' 공사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는 단계에 당도했다.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미래가 염원에 그치지 않고, 실현의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는 시점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런 변화의 뒤에 세종시의회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밝아온 길을 다지고, 다가올 길을 개척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모든 여정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세종시의회_2023년 10월 6일

③ 전국이 주목한 세종시의회, 잇따른 수상으로 정책 경쟁력을 증명하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²⁾에서 입상하며 전국적으로 정책 경쟁력을 증명했다.

먼저 2022년 11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시민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가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이어 2년 연속 결선에 진출하는 결실을 봤다.

특히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제’는 시청·교육청 조례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시민사회단체, 법률·입법 전문가 등 다양하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주력했다. 또한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의원설명회를 열어 자치입법 관심을 제고하고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1월 6일 세종시의회는 또다시 동 대회 본선에 진출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사례를 주제로 참가해,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취가 더욱 깊은 의미를 더했다.

끝으로 2025년,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또한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해당 조례는 이날 대회에서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에 대비하고, 그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 입법으로 평가받으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후속 정책도 수상 배경이 됐다. 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가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사전 점검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아파트가 많은 구조적 특징을 가진 세종에서 화재예방 입법의 수요가 필수적이었기에 이번 조례 제정이 실효성 있는 입법이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세종시의회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2년 11월 11일



세종시의회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2024년 11월 6일



세종시의회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5년 11월 21일

²⁾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경진대회.

④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의정모니터단 운영’ 강화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불편 및 제도 개선사항과 더불어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의회에 전달함은 물론, 의정에 반영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과 의정활동 모니터 등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시민 참여제도다.

세종시의회는 제4대 의회 출범 시기인 2022년부터 기존 20명이었던 의정모니터단의 정원을 40명으로 두 배 확대했다. 모니터단 공개 모집 시 참여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춰 10대부터 70대(제4기, 80대)까지 전 연령층이 고르게 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령대의 다양화 또한 도모했다.

위촉된 제3기, 4기 의정모니터단은 각각 임기 2년 동안 위촉식과 전체 간담회, 상임위원회별(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 분과 간담회를 차례대로 거쳐 상임 위 소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과 차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을 모니터하며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게 의정

활동 참여 과정에서 작성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하는 보고회도 분과별로 이루어졌다. 이후 성과보고회를 통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의 시선에서 정책과 행정을 점검한 기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매해 거듭됐다.

성과보고회에서는 활동 과정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의정모니터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수상자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을 통해 시민과 의회가 이어지는 의정 기반이 꾸준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인 만큼,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나르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 참여 범위와 활동 분야를 다양화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향해 발돋움할 전망이다.



2023년도 제3기 의정모니터단 성과보고회_2023년 12월 22일

“일 잘하는 의회”

“행정수도 완성”



“정책 경쟁력 증명”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2025년도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간담회_2025년 3월 20일

⑤ ‘청소년 의회교실’로 민주주의 꿈나무 육성

세종시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배움터’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현안을 직접 다루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몸소 체험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도록 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더욱 다양해진 참여 학교와 증가한 참여 학생 수를 자랑하며 내실 있는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총 학생 수는 4,176명, 학교 수는 관내 37개교에 이른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비중을 2024년 대비 3회 증가한 10회로 늘려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였다.

프로그램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직접 본회의를 체험하는 ‘모의의회’와 시의원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 등 의회 내부를 견학하며 현장 지방자치를 경험하는 ‘의회 견학’,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본회의 방청’ 등 총 4가지로 구성, 운영됐다. 이 같은 경험이 순간의 체험을 넘어 민주주의 절차를 습득하는 계기로 남을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는 매해 소감문 공모전도 마련해 우수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장차 세종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이끌 주역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 의미를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다지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학교 학생이 의회교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와 홍보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여울초등학교 본회의 방청_2025년 11월 25일



바른초등학교 찾아가는 의회교실_2025년 9월 19일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 통계

모의의회 진행 총 18회

의회견학 진행 총 47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총 31회

본회의 방청 총 25회

참여 학생 수 총 4176명

참여 학교 수 총 37개



한결초등학교 의회 견학_2025년 7월 2일

“의사과정 체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

“민주주의 꿈나무 육성”





제104회 임시회 폐회... 제4대 세종시의회 공식 회기 마무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

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같은 달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도 이어졌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또한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시정 4기 재정 운용을 책임있게 마무리 해달라고 제언했으며,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이 채택됐다.

끝으로 3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세종시의회는 제4대 의회 공식 회기 일정을 매듭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안신일·유인호·김현미·김효숙·박란희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언했고,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공공시설물 재원 부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조례안, 동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 등 지역 현안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총 46 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임채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대 의회는 임기 동안 총 1,090여 건의 조례 제·개정과 활발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견해차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민주적인 대안을 찾아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온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제4대 의회는 시민과 함께한 시간을 가슴에 새기며, 남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 비례대표 의석 정수 2석에서 3석으로... 확대 반영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월 30일,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현행 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3석으로 확대하고 의원 전체 정수를 21명으로 개정하고자 임시회를 열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이 변화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닿는 의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

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3석으로,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買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 공공시설물 자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자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직접 분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총 117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2030년 기준 약 1,8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운 의원은 현재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은 특성과 단층제 구조에 놓여있는 세종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대로 가다간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건립 자원 분담률 전면 재검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 즉각 마련 ▲세종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104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 용어안내 |
- ◆ 운영위: 의회운영위원회
 - ◆ 행복위: 행정복지위원회
 - ◆ 산건위: 산업건설위원회
 - ◆ 교안위: 교육안전위원회
 - ◆ 특별위원회: 안건명 상 동(同)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 2026. 3. 11.

항	의안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952	의장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953	의장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4955	김현미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 2026. 3. 12.

항	의안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956	최원석 의원 외 6명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행복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2	-	의장	휴회의 건(2026.3.13.~3.22./10일간)	행복위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26. 3. 23.

항	의안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926	홍나영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	4927	김영현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	4928	김영현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4	4926	최원석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보다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	4927	이현정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6	4928	안신일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7	4929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8	493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9	4931	시장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0	496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1	491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2	491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3	491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4	4916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5	4917	김충식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6	4918	김현미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17	4919	이순열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8	4933	김현미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9	4934	유인호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0	4938	김영현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21	4939	이순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2	4940	김현미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3	4941	김현미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4	4942	김충식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5	4920	시장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6	4921	시장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7	4922	시장	장군면 늘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8	4943	김재형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9	4944	김학서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0	4945	김재형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1	4962	김광운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산건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32	492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3	492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4	4925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교안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5	4947	이현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6	4948	김동빈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7	4949	윤지성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교안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38	4950	김현옥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9	4951	윤지성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교안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40	4957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특별 위원회	원안 가결	원안가결
41	4958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특별 위원회	원안 가결	원안가결
42	4959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특별 위원회	원안 가결	원안가결
43	4960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특별 위원회	원안 가결	원안가결
44	4961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특별 위원회	원안 가결	원안가결
45	4954	의장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6	4963	의장	세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제105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항	의안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966	의장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967	의장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4968	행정복지 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	원안가결



상임위원회 활동

24

의회운영위원회

25

행정복지위원회

27

산업건설위원회

29

교육안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안신일 위원



이현정 위원



홍나영 위원

운영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로 의정활동 마칩표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조례안은 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비해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여미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

행복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끝으로 제4대 의회 상임위 활동 매듭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소통 장벽 없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촉진했으며, 여미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점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매듭지었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문학분야 전문예술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23일 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회장 정일화),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문화예술과는 시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위원장은 제도가 규정대로 운영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논의된 맹점을 보완해 집행부가 예술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집행부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역 문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기관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순열 의원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이 일회성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부와 문화관광재단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 산업건설위원회 »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학서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충청권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현황 점검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를 방문해 자율주행버스 시승과 함께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충청권 BRT 노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실증사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했다. 또한 향후 특정 조건 내에서 시스템이 모든 운전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실증 및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일반버스와의 차별점에 있어 시민 체감도 확인 필요 ▲입석 허용 시 운행 상황 대비 안전성 담보 방안 구축 ▲운행 중 오류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현황 점검에 동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자율주행버스 탑승객 현황, 돌발 상황 발생 빈도 및 현황 등 운행 데이터와 안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운영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자율주행에 가장 최적화된 여건을 갖춘 만큼 향후 완전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반기 활동 마무리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7일과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1,2차 회의를 끝으로 하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폐지 조례안」은 각각 내용 조정(공공건축물 자원 분담률 문제 추가 필요)과 폐지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반기 동안 12차례 회기, 총 52회 회의를 통해, 예산·결산을 예비심사했고 조례안 등 28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세종함강캠핑장 수해복구 현장을 비롯해 북부권 주요 거점시설, 세종 유기동물 보호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24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를 점검하고,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시정 발전에 이바지했다.

후반기 주요 제정 조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재형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최원석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김학서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김현옥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김효숙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신일 의원) 등이 있다.

김재형 위원장은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 농업, 도시·주택, 도로·교통, 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며 “그간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세종시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 교육안전위원회 »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제4대 하반기 의정 활동 마무리



교육안전위원회는 3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여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장려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도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여러 문제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위원 구성 범위를 조정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더했다.

김동빈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현재 온라인학교로 운영 중인 ‘온세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온라인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고운동에 '외교단지 유치' 촉구

김재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위해 ▲핵심 정책 과제 공식화 ▲도시 전체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고운동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외교 기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종시가 더 큰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세종 대중교통 이용 늘었지만, 시민 만족도 아직 부족”

김현옥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음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라며, “이제는 이용률이라는 수치를 넘어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

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행부는 일방통행 행정 멈추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이순열 의원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하며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 엄수 ▲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확립을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 및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 제안

최원석 의원은 “도시계획의 뒷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획일화된 건물 외관과 프랜차이즈 상점 등으로 만들어진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무려 1조 3,400억원에 달한다”며, “상가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현실 앞에서 국비 공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세종시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기획자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범정부 공모사업 적극 추진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했다.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세종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 만들자”

김재형 의원은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당시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된 고복저수지에 대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명칭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점을 설명하고,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예술 치유 공간 차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 조성 및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 수립에 맞춘 중장기 조성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완성해야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4년, 이견태 의원)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며 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황 또한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안내 절차가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준하는 인력 배치 및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학병원이 있는데, 왜 지역 상권은 살아나지 않는가?”

최원석 의원은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고, 외래 전체 환자 수약 10% 줄었다. 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며 대학병원 이용률 저하가 지역 상권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앞서 3월 3일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병원 관계자 및 집행부와 관련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당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병원, 지역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라며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성과가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홍나영 의원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홍나영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세종,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 필요

김현미 의원은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동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멈춰선 세종시 시계, ‘운영과 자생’의 시대로 나아가야”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위기를 경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3대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국 1위의 상가 공실률을 언급하며 “나성동과 어진동 등 중심 상권에도 적막감이 감돌 만큼 침체한 실정”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상가를 짓고, LH는 분양하며, 세종시는 관리만 하는 현 체계의 효율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통합 거버넌스 실질화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용도 대전환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제는 국가 주도의 건설 관성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 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식이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신일 의원
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시대착오적 전력 정책”

안신일 의원은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인 ‘자산지소(地產地消)’의 원리를 다시금 일깨웠다”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등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수송 중심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TF를 구성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세종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송전선로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또 정원인가? 시민 공감 없는 일방적 정책”

유인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급격한 정책 방향’의 변경이다. 2021년 당시 주차 공간과 놀이·문화 중심의 ‘광장’으로 계획되었던 공간이,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급격히 그 목적을 ‘도시정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어 ‘형식에 그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진행한 선호도 조사의 4가지 안 모두 ‘정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포괄성을 결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지적이다. 또한 시티앱이라는 제한된 창구를 활용한 점과 언론, 읍면동 자치 조직 등 다양한 시민 접점 채널을 통한 안내가 부족했던 점도 꼬집었다.

더불어 유 의원은 “이 광장은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남고, 지상부 일부는 탄력적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행정수도 흔들기 더는 안 된다!”

최원석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개헌 논의는 그 의미와 방향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전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책임 있게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잔류 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들는 그 어떤 논의에도 분명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했다.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공약 포함)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 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어떻게 바뀔까?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회의 변화를 두 단어로 집약하자면 **확대**와 **심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시스템 심화, 두 가지 관전포인트로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회의의 포문을 연다. 더욱 성장하고 세밀화된 체계로 꾸려진 제5대 세종시의회를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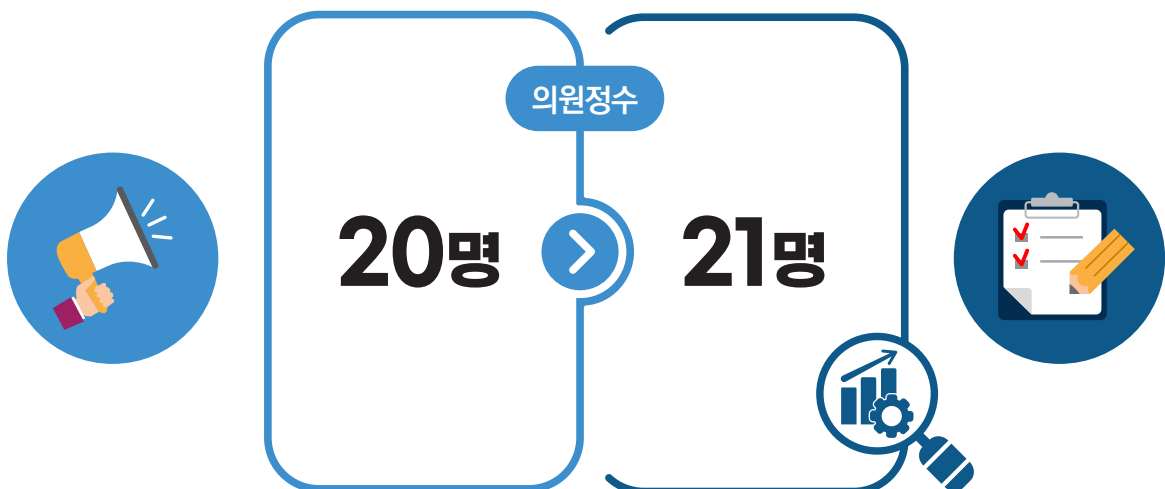
관전포인트 20명에서 21명으로, 의원정수 확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월 30일 오전 제105회 임시회를 열고 세종시 의원 비례대표의 정수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4월 23일 국회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10%에서 14%로 상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세종시의회는 현행 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3석’으로 수정해 확대하고, 의원 전체 정수를 21명으로 개정했다.

비례대표 1석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지역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소수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의회로 닿을 창구의 확대를 의미한다. 구조의 재편을 넘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반인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확대된 의석으로 제5대 의회를 열며 지역구 위주 의제가 담지 못했던 소외된 사각지대의 문제들까지 더욱 활발하게 의회에 닿을 수 있도록 ‘정치 효능감’ 발휘에 힘을 전망이다.





관전포인트2

의회 새 식구, '상임위원회' 증설로 전문성 제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5대 의회 개원을 맞이해 기존 4개 체제로 운영되던 상임위원회를 5개로 증설한다.

세종시 출범 이후 꾸준한 시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화하는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 감독할 의회의 상임위원회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각 상임위 소관 분야는 광범위해지고,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업무 과부하와 비효율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의회 입법활동과 집행부 감시 및 통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재구조화를 아래와 같이 본격화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4개로 운영되던 상임위원회 체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로 개편됐다. 또한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문화체육관광국과 시설관리사업소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경제산업국·도농상생국·투자유치단·농업기술센터가 각각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이 됐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자치경찰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 여건이 조성됐다.

세종시의회는 새롭게 정비된 전문위원실 체제를 동력으로 삼아 더욱 세밀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층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 의정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실·국·부서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	공사·공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위원회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공보관·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읍면동		세종연구원 사회서비스원
경제문화위원회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문화체육관광국	투자유치단·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로컬푸드(주)	문화관광재단 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복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교육원·진로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학교지원본부·안전체험교육원 소방서·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안〉



칭럼문답

나의 칭럼 지식, 어디까지일까?

수 없이 마주하는 공적, 사적 상황에서 매 순간 기로에 서는 당신!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올바른 선택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칭럼문답'을 통해 칭럼 자가 진단을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선택은?



Q.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알고 보니 직무 관련자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사적관계에 호소하며 은근슬쩍 수의계약 시 이득을 달라는 친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① 친한 만큼 부탁을 들어주고 딱 밥 한 끼만 얻어먹는다.
- ② 친구니까 일단 어떤 부탁인지 들어는 본다.
- ③ 부정청탁임을 이야기하고 거절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정답은? ③번! ‘부정청탁임을 이야기하고 거절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한다’입니다.

해설: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예외가 있을 수 없겠죠?

Q. 주식에서 큰 수익을 봤다며 200만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선물한 동호회 지인, 직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인인데... 받아도 될까요?

- ① 중고장터에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다.
- ②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바로 반환한다.
- ③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기쁘게 받아서 잘 쓴다.

정답은? ②번!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바로 반환한다’입니다.

해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무와 관련된다면 더욱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도 안 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Q.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민원인이 찾아와 직접 기른 배라며 2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줬습니다. 평소라면 15만원이 한도인데, 지금은 명절 일주일 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① 명절엔 가액 범위의 2배까지 가능하므로, 맛있게 먹는다.
- ② 일단 다 먹고 나중에 20만원을 주면 된다.
- ③ 10만원을 넘었으니 무조건 돌려보낸다.

정답은? ①번! ‘명절엔 가액 범위의 2배까지 가능하므로, 맛있게 먹는다’입니다.

해설: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에 따라 설날·추석 명절 기간(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 상품권의 경우 15만원)가 평소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문턱을 넘어야
달을 수 있다

카페 재생



체온도 옷장도 혼란스럽던 5월 초입이었다. 연일 짧은 소매와 긴 팔, 걸음이 부지불식간에 변덕을 부리는 날씨의 박자로 들쭉날쭉했다.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핑계로 갖은 마음의 변덕도 불쑥 찾아왔다 떠나고 하는 계절, 다시금 여름을 맞이할 봄의 끝자락에서 있었다.

계절의 문턱에 서서 마지막과 시작의 경계를 겪는 반복은 언제쯤 편해질까. 연서면에 자리한 **카페 재생**(연서면 고북 오봉산길 18)은 변화의 불편함, 경계를 넘을 때 마주하는 작고 큰 두려움에 대해 ‘긍정의 화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고북 저수지로 향하는 고북리의 구석진 길을 쭉 따라가다가, 작은 독길로 빠지면 빨간 벽돌이 기둥을 수놓은 건물 하나가 나온다. 다소 생경한 첫인상 탓에 멈칫한다. ‘잘 못 찾아온 건가?’ 흥미롭게도 경계심은 카페 재생에 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친절한 이정표다. 몇 걸음만 더 걸으면 경계심은 방문자를 환대하는 정원과 평말을 만나 반가움과 안도감으로 변한다. 이곳을 ‘문턱을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곳’

이라고 소개한 이유다.

카페 앞까지 왔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는 방문객도 많다고 한다. 외진 위치, 넓게 펼쳐진 논밭, 주택인지 가게인지 알아채기 힘든 외관 덕에 경계를 넘고자 용기를 가진 이들만이 이곳에 발을 들일 특권을 얻는다. 그리고 한 번 발을 들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망설임 없이 기꺼이 뛰어들고 싶어지는 곳, ‘카페 재생’이다.

카페 재생의 이름은 ‘재생으로 재생하다Recycle to Playback’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물의 뼈대를 남기고 과감하게 공간을 재생Recycle하고, 그 속에서 방문자들의 일상이 재생 Playback 되었으면 하는 사장님의 바람을 담았다. 내부 공간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곳은 과감하게 윤곽만 남기고 가운데를 파낸 입구 좌측 벽면이다. 파괴와 미완성의 질감이 하나의 오브제로 거듭난 카페 재생만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거친 콘크리트와 불규칙한 선은 공간 내부에 독립된 또 하



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원래 갤러리처럼 활용하려 만든 '깨진 벽' 공간은 갓난아기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찾아 카펫이 깔린 좌식 테이블로 재구성됐다. 본래 목적과 달라져도 좋다. 손님들이 어떤 의미든 '재생'의 시간을 만끽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 공간은 또한 카페 재생의 운영 철학과도 맞닿는다. 사장님은 카페 재생이 '수식어가 없는 카페'로 길게 남길 바랐다.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 커피가 맛있는 카페로 불리기보다 아주 보통의, '평범한 카페'로 긴 시간 연서면 고복리에 남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 소망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방문자들은 첫 번째 방문에서는 손님처럼, 두 번째 방문에서는 친구처럼, 세 번째 방문에서는 가족처럼 마음의 거리를 서서히 좁힌다. 어느 가족은 계절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통창 앞에 펼



쳐진 밭에서 물을 대고 모내기를 거쳐, 추수하는 장면을 본다. 어떤 어린이는 동네 놀이터처럼 카페 앞 그네만 타고 돌아가기도 한다. 밭일하다 새참이 필요한 노부부는 장화를 신고 들어온다. 행인은 자전거를 타다가 목을 축이고 돌아가고,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먹으며 제2의 영감을 얻는 작업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이도 있다.

커피를 마신다는 하나의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 곳, 배움과 놀이, 쉬과 충전, 영감의 장소로 시시각각 변모하는 곳. 카페 재생은 또 새로운 얼굴로 울여름 방문자들의 시간을 재생할 간판을 내걸고 있다. 잘 들여다보아야지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인다. 새겨질 문자의 생김새는 당신의 눈에 있다. 글사진_김영주

세종에서 놀자, 쉬자

싱그러운 풀 내음이 가득한
여름이 다가옵니다.
더위를 식힐 축제가
간절한 지금,
한여름의 그늘과 물줄기가 되어줄
현장을 찾아가
달궀진 열기를
씻어낼 시간입니다!

12시 런치 콘서트



무엇을?

세종예술의전당 로비에서 점심
식사와 함께 천천히 즐기는 라이
브 공연. 바쁜 일상 속 점심시간,
세종예술의전당 로비에서 가볍
게 쉬어가는 음악 한 끼 어때요?

* 예매 필요

언제?

2026년 6월 10일~9월 23일
(격주 수요일) 12:0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로비

가격은?

전석 20,000원

상세정보는? ▼



19시 야민락콘서트



무엇을?

세종예술의전당 로비에서 저녁
식사와 맥주 한잔을 하며 생생한
사운드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
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지친 하루
의 끝, 특별한 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예매 필요

언제?

2026년 6월 17일~9월 19일
(격주 수요일) 19:0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로비

가격은?

전석 20,000원

상세정보는? ▼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THE LAST>



무엇을?

더 강력해진 5446부대와 11명의 국정원 요원들이 펼치는 압도적 액션 뮤지컬. 2016년 초연 이후, 11만 관객을 사로잡은 K-창작뮤지컬의 대표작을 만나봅시다.

* 예매 필요

언제?

2026년 7월 17일 19:30 / 18일 14:0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A석 60,000원

상세정보는? ▼



뮤지컬

<서편제>



무엇을?

소리꾼의 운명을 타고난 남매의 애절한 삶과 우리 가락의 정수를 담아낸 수작. 가슴을 울리는 판소리 선율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K-뮤지컬의 대표 명작이 펼쳐집니다.

* 예매 필요

언제?

2026년 7월 30일~31일 19:30 /
8월 1일 14:00, 18:3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VIP석 150,000원 /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상세정보는? ▼



연극

<림스>



무엇을?

아이와 환경, 책임에 대한 고민을 밀도 높은 대사로 풀어낸 2인극. 최소한의 무대 장치와 배우의 연기만으로 인간의 생애와 사랑을 탐구하는 독창적인 연출이 무대에 오릅니다.

* 예매 필요

언제?

2026년 8월 7일 19:30 ~ 8일 15:0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44,000원
S석 33,000원

상세정보는? ▼



국립국악원

<연희판, 흥으로 잇는 세상>



무엇을?

전국 팔도 연희의 정수를 한자리에 모아 신명 나는 재담과 화려한 기예를 선보이는 축제. 관객과 연희자가 함께 호흡하며 우리 민족 특유의 낙천적인 '흥'과 공동체 정신을 나눠보아요!

* 예매 필요

언제?

2026년 8월 20일 19:3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전석 20,000원

상세정보는? ▼



의정주요뉴스

2026. 04. 0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3월 제104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4월 2일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이순열, 최원석, 이현정 시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세무사, 회계사, 경력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됐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사했다. 아울러, 위촉식 후 1층 대회의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감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또한 시행했다.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04. 16.

2026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작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월 16일을 시작으로 관내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세종시의회는 매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주시민 역량 강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모의의회’와 ‘의회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및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이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주요뉴스

2026. 04. 22.

2026. 04. 28.

호주 차세대 정치지도자 접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월 22일 호주 차세대 정치지도자 대표단 9명을 맞이하고 양국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호주정치교류위원회(AusPol)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정례적으로 추진해 온 '한-호 정치 차세대지도자 교류 방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방문단에는 단장인 클라라 안드리치 서호주 상원의원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리 호주수도준주(ACT) 의원, 조던 레인 뉴사우스웨일스 하원의원 등 현역의원 3명과 정당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김호숙 제1부 의장과 김동빈 제2부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들은 호주대표단과 함께 상호 실질적인 의정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세종시와 유사한 단층제 행정 체계를 갖춘 캔버라 소재 호주수도준주(ACT) 엘리자베스 리 의원과는 향후 양 도시 의회 간 우호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청렴 주가' 상한가 도전... 제1차 청렴리더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월 28일,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1차 청렴리더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청렴도 제고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2026년 반부패 핵심 과제인 '우리 모두 청렴 주주(株主)'의 세부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리해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모색 방안에 동참했다.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 원칙 공유를 통한 조직 투명성 강화 ▲MZ세대와의 공감대를 위한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한 업무 배분 등 조직문화 체질 개선과 같은 주제가 논의됐으며,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진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리더단*은 솔선수범의 의지를 공식화하며 청렴이 의회 내부의 일상 문화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청렴리더단: 청렴 정책 이행 및 환류를 주도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반부패 청렴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사무처 내 과장, 팀장급 청렴 협의체

의정주요뉴스

2026. 05. 14.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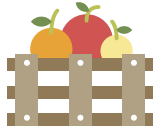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과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문의 형식과 체계, 본칙 및 부칙 구성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조례안 작성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강의는 법제처 법제교육과 박일남 서기관이 맡았으며, ▲법령의 기본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법령 용어와 표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자체법제교육 연간계획에 따라 의회 운영 기본 과정, 의정지원 실무 과정, 기본 법·제도 과정, 행정 사무감사 및 예·결산 대비 과정 등을 운영하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과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에서 주말농장의 호사스러움을 느끼는 전원생활

윤석천(조치원읍)

나이 들면서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전에 살다가 도시와 전원생활을 함께 누리고 싶어 우리 명품 세종시로 이사를 왔다. 벌써 4년 전이다.

세종에서 자리를 자리를 잡자마자 신문에 섞여 들어온 광고 홍보지에 “조치원 쪽에서 주말농장을 분양하니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그러잖아도 늘 생각을 갖고있던 터라 눈에 확 띄었다. 평소 꿈꿔온 농사일을 펼쳐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그동안 마음에만 있었을 뿐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각오였던 것이다.

결국 봄이 오기 전에 조치원의 주말농장에 4평을 분양받았다. 코딱지만 한 크기였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대농장 주인이었다.

하지만 난생처음 해보는 농사일이라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때마침 옆 구획에 프로급의 농장주가 세세히 가르쳐주고,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오신 분이 거들어주면서 나의 농장은 차츰차츰 틀이 잡혀갔다.

다닥다닥 맞닿은 농장에 여럿이 한데 모이다 보니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거지와 그들로부터 귀동냥해 얻은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농장은 집에서 출발해 드라이브 코스로도 그만이었다.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올라가자, 잡풀이 여기저기서 쭉쭉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갈 때마다 김을 매는 것이 생활화됐다. 주말농장이 나에겐 일일농장이나 다를 바 없었다. 한여름 내리쬐는 퇴약벌에서 얼마나 땀방울을 쏟아냈는지, 영락없는 농사꾼의 몸풀이 되었다. ‘땅은 정직하다. 뿌린 만큼 거둔다’고 했던가. 그 덕택에 여름 내내 무공해 신선 채소류가 식탁을 풍요롭게 했다.

특히 상추와 고추는 수확의 즐거움을 키워 주었다. 땅과 바람과 태양이 선물해 준 풍성한 농작물은 우리 식구들이 다 먹기에는 너무 많아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수시로 나눠주는 선심성 효자작물이었다. 대풍인 고추 농사의 경우 초짜인 나에게 풍성함을 안겨주면서 큰 보람을 주었다. 땀의 결실이기엔 나눠주고 전해 받는 마음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올해 벌써 두 해째 농사꾼이 됐다. 나는 지난해 기록해 뒀던 ‘주말농장 일지’를 꺼내 들고 지난 1년간의 농사일을 돌이켜 보며 이미 새로운 농사일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2025년에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올해는 더 알찬 결실을 거두리라는 각오도 다져본다. 지난 주말엔 정지작업과 함께 거름주기기를 하면서 이웃 초짜 농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은 호사를 누렸다. 2년 차 주말농장에는 열무, 상추, 고추, 오이, 대파 등 싱싱한 채소류를 수확하며 식탁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어느덧 넉넉해진다.

세종시민 여러분, 2026년에는 푸르고 맑고 청정한 세종의 농촌마을로 달려가 알찬 주말농장 한번 가꿔 보시길...





입법정보

53

I. 생활법령

59

II. 주요입법동향

63

III. 법령해석사례

66

IV. 최근시행법령

68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I. 생활법령

사례 1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위법한 것일까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나성실 씨는 A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A주식회사의 한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가 해당 영업소를 폐점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 직원인 김관리 씨는 나성실 씨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나성실 씨의 동의 없이 나성실 씨와의 대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녹음했습니다.

이후 나성실 씨는 이러한 녹음행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A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그리고 김관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 김관리 씨 :

녹음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어요. 게다가 녹음행위에 대해 나성실 씨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불법행위인가요?

② 나성실 씨 :

저는 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녹음이 분쟁 예방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저와의 대화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제 음성권이 침해당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와 김관리 씨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정답은 1번

김관리 씨: “녹음은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어요. 게다가 녹음행위에 대해 나성실 씨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불법행위인가요?”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회사 측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직원의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 (2)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3) 이 사건 녹음행위는 회사 측이 영업소 폐점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원이 녹음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회사 측이 직원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회사 측은 근로계약 갱신 문제에 관한 직원의 반응을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으며, 대화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직원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녹음파일 등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고 외부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제출로 인해 직원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의 녹음행위는 나성실 씨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성실 씨를 기망·협박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파일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범위에서만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음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분쟁 예방의 필요성과 대화 내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녹음행위로 인해 나성실 씨가 입게 되는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주식회사와 김관리 씨가 위 사례에서의 녹음행위로 인해 나성실 씨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결일 : 2026년 3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생활법령

사례2

반대 의견을 기재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행복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씨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 회장인 B씨는 행복동 재개발 사업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개최 당일, B씨는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A씨는 과도를 이용해 현수막의 끈을 잘라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행위가 지주협의회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A씨 :

현수막에 게재된 글은 주민총회 불참을 권유하는 단순한 의사 표현일 뿐이지, 지주협의회 구성이나 운영, 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본래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철거한 제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B씨 :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을 더 확보하고 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반대조직에 가담하지 말라거나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유 내용을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한 방법이 위법이 아니니 보호받아야 할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수막을 위력을 사용해 철거하는 행위는 현수막 게시를 통해 지주협의회 입장을 알리고 홍보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1번

A씨: “현수막에 게재된 글은 주민총회 불참을 권유하는 단순한 의사 표현일 뿐이지, 지주협회의 구성이나 운영, 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본래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철거한 제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위 사례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 (2)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3)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게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4) ① 이 사건 현수막에 게재된 글은 지주협회의 구성이나 운영, 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지주협회의 본래의 업무를 지주들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단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지주들에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 등을 알리면서,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주민총회 개최 일정에 맞추어 일회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③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시기, 경위와 목적, 이 사건 현수막의 구체적 내용, 지주협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회장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이 추진하는 주민총회의 원활한 개최, 진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일회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통해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을 알리는

것을 두고 피해자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건의 현수막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당일 일회적으로 설치된 것에 불과하고,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혹은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의견 표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인이 게재한 현수막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26년 3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 주요입법동향

1. 최근공포법령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공포 '26. 4. 21. / 법률 제21545호)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회사 등에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전환하여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며,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 '26. 4. 9. / 법률 제21543호)

-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의료법

(공포 '26. 4. 7. / 법률 제21524호)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현행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
-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다가 그 미청구·미신청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3. 최근 국회 접수 법안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등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등 10인)

-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48조의2 신설 등).

4. 최근입법예고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등 20인)

(의견제출 '26. 4. 29.까지)

- 최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청소년은 아무런 도움 없이 방치될 경우 성인이 되어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위기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정신건강 유지 여부는 성장과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전문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
-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에게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1인)

(의견제출 '26. 5. 1.까지)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록·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법령해석사례

질의(법제처-26-0055 / 회신일자 '26. 3. 30.)

- ①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질의요지

-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에서는 등기우편물(각주: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수취인·동거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등기우편물을 같은 영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각주: 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이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이라 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각주: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각주: 우편집배원이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사진을 찍는 것 등을 말함.)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수취인등의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로 무인우편물보관함등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취인등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무인우편물보관함등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에도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우편집배원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배달확인 증명자료만으로 수취인등의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수취인등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으로부터 배달확인 증명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한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IV. 최근시행법령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6. 4. 22. 시행)

-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상향 조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중대선거구제 실시 대상 선거구를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3헌바78)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을 조정하며,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6. 4. 21. 시행)

-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 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인바,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26. 4. 17. 시행)

-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약사법

(일부개정, '26. 4. 12. 시행)

-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함.

5.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6. 4. 7. 시행)

-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6. 화장품법

(일부개정, '26. 4. 2. 시행)

-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1.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6. 4. 22.]

제안이유

과천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천시 별양동 일원 노점상 유도구역 내의 노점상이 유도 구역 관리 정책에 따라 영업을 중단할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제2조)
- 나.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제10조)

2.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6. 4. 22.]

제안이유

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다변화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대상과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나.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 다.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제8조)

3. 가평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6. 4. 20.]

제안이유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가평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이스포츠 시설에 관한 사항(제6조)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9조)

4.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6. 4. 20.]

제안이유

드론은 재난 대응, 치안·안전 관리, 농업 자동화, 환경 모니터링, 물류·배송 서비스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임.

이에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가. 드론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제7조)
-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8조)



세종시의회 2026년 하반기 회기 일정 안내

하반기 회기 일정은 다가오는
계간 『세종의정』 통권 제49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간편하고 빠르게 세종시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누리집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시민 필자 모집 안내



계간 『세종의정』에서는 역량이 뛰어난 시민 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 포토에세이, 수필 등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시의회 방청이나 방문, 의정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분,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해 주실 분, 가장 일상적인 시선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 주실 분 등 숨은 작가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증이메일 제출 시 한글 혹은 워드 파일로 작성 바랍니다.
- ☑ 포토에세이 제출 시 사진 원본(5MB 이상 고화질, 스마트폰 촬영 지양)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 선정된 분들께는 별도로 화신해 드립니다.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포토에세이 시 5매 내외)입니다.
- ☑ 적합한 원고가 없을 시 미선정되어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우 편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 화 | 044.300.7248 팩 스 | 044.300.7219
이메일 |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종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집
접속

<https://council.sejong.go.kr>

홍보관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